

공 고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

대전전파관리소장(관인생략)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6. 9. 22.(화) 14:00**
5. 청문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6-50-0000122	275해*호	김*태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옥남길
2	42-2024-50-0000058	201성*호	한*철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3	42-2022-50-0000079	250빅**호	김*환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
4	91-2023-50-0000001	-	한국***** 총장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5	91-2023-50-0000002	-			
6	92-2021-50-0000037	DS3**S	한*석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시 동구 가오동
7	42-2009-30-0000180	700해**호	김*인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8	41-2021-50-0000024	201우*호	김*만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시영길

7. 참고사항

-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